



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

국내외 입양인이 입양 관련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청구하면, 아동권리보장원이 절차에 따라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입양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체성 확립을 지원합니다.

I 제공정보

구분	내용	비고
입양인의 배경정보	입양일, 입양사유, 입양 전 이름, 출생일시,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등	기록물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에 한해 입양정보공개청구 시 제공
친생부모의 인적정보	입양당시 친생부모의 성명, 연락처, 생년월일, 주소	친생부모가 동의하면 공개 가능

국내·외 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사업

대상	지원구분	지원내용
국내	통합서비스 지원사업	- 생애주기별 교육·사례관리 등 지원 - 특수육구 아동 양육 지원 - 전국단위 입양가정 대상 프로그램 지원
	자조모임 지원사업	- 자조모임 지원
	심리정서 지원사업	- 전문상담 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국내 입양가정 대상 심리정서 검사 및 상담지원
국외	국외(현지) 단체지원	- 시민권 취득지원, 국외입양인 권익신장 - 심리정서 지원, 모국에 대한 이해 증진
	국내 단체지원	- 모국방문 및 친생가족 상봉 지원, 모국생활지원, 모국어 연수

가정위탁 제도

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양육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* 만18세 이상이라도, 아동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보호 가능

I 위탁가정 유형

유형	내용
일반 위탁	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과 그 외 혈연관계 없는 자에 의한 양육
전문 위탁	학대피해아동, 2세 이하(36개월 미만) 아동, 장애아동, 경계선 지능아동 등 전문적이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 양육
일시 위탁	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로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위탁하여 양육

I 가정위탁 신청절차



1 가정위탁 신청

시·군·구(읍·면·동)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청



2 신청자 자격확인 가정조사

가정환경조사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이력 조회 등



3 위탁부모 양성교육

일반위탁: 5시간 / 전문위탁: 20시간



4 위탁부모 자격인정

예비위탁가정으로 등록되어 관리



5 아동배치보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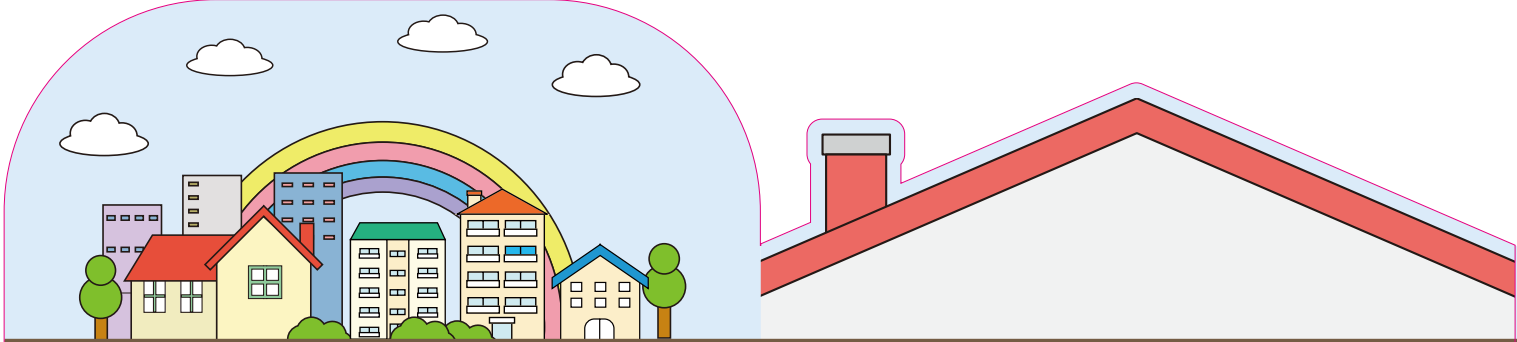
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보호 양육

가정위탁지원센터
대표번호

1577-1406



입양사업 안내



아동권리보장원 안내

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(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)에 의해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.

그 중 입양사업은 「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」, 「국제입양에 관한 법률」, 「아동복지법」을 기반으로 '아동 최선의 이익'을 위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여 국제규범(헤이그협약)과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입양신청 방법

입양을 희망하는 예비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신청서 및 필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하며,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.

참고

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→ 사업소개 → 입양 → 입양절차 및 신청안내



입양신청안내 바로가기

입양문의처

- ☎ 국내입양 신청문의 02) 6454-8608, 8610, 8611
- ☎ 국제입양 신청문의 02) 6454-8612~8614

국내입양 절차

I 예비양부모 관점



II 아동 관점



국제입양 절차

I 외국으로의 입양



II 국내로의 입양

